

건 설 과

위원회별	소관부서	감사항목	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	처 리 결 과			비 고
				계	완결(계속추진)	추진중	
산업건설위원회	건 설 과	9	1	1	1	-	

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(건 설 과)

연번	감사항목	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11	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 대상지역 재 검토	○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도 24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5개읍면에 5억원을 넘게 지원 하였는데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면 5km 이상인 읍면 지역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니까 타 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	○ 합천댐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'03~0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5개읍면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, ○ 댐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구역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- 건설교통부에 질의결과, 댐정비사업과 댐지원 사업 관련 법규정과 동일하게 “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”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으며, - 합천댐관리단의 질의회신에서는 댐지원사업이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, 댐관리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댐의 건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 규정(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제1항 4호)하고 있는점을 고려하면,	완 결 (계속추진)	

연번	감사항목	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11	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 대상지역 재 검토		<p>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하며,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대적용한 특수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.</p> <p>○ 이러한 답변을 종합해 볼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댐건설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아 규정한 “댐의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”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-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”을 확대적용하기는 어려우며 - 해당되지 않는 7개면에는 댐정비사업 준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	완 결 (계속추진)	

연번	감사항목	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	처 리 결 과	완결여부	비고
11	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 대상지역 재 검토	○ 본 사업비로 각생들농로 정비사업을 하였는데 한들과 각생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획으로 인하여 농로포장 사업비도 지원받지 못하는등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계획을 해지하고 농로포장을 할때에는 반드시 농로폭을 측량하여 농로부지를 찾는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.	○ 거창읍 각생들 및 한들은 거창을 대표하는 큰들로서 한들의 경우 1967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,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대규모 경지재정리사업을 계획 하였으나 몽리민의 동의(법정동의율70%)부족으로 대규모 경지 재정리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, 기반시설(농로 및 용배수로)정비사업 시행시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 잠식된 농로 등은 측량 및 기부체납 등을 통하여 노폭을 확보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.	완 결 (계속추진)	